내국인간 배당간주금액의 산출배제 예시 ❶ 내국법인(갑) 내국법인(을) A국 법인 특정외국법인 - 위와 같은 출자관계가 있을 때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 ‘을’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‘갑’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 \* 전제조건：내국법인(을)은 국조법§27규정의 내국인에 해당되는 경우 ❷ 내국법인(을) 특정외국법인 100% 40% 60% 내국법인(갑) - 내국법인 ‘갑’과 ‘을’의 배당간주소득(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10만불로 가정) ･ 내국법인(갑)의 경우：10만불×60%＝6만불 ･ 내국법인(을)의 경우：10만불×40%＝4만불 - 내국법인 ‘갑’이 ‘을’을 소유하였다 하여 ‘을’의 배당간주금액을 ‘갑’의 배당간주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